

내부신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내부 신고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감사원이나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부 신고는 내부인에 의한 공익적·윤리적인 행위이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부정부패는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감사로 적발하거나 일반인이 감지하여 신고하기에는 원천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로 인해 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은 이러한 내부인에 의한 신고가능성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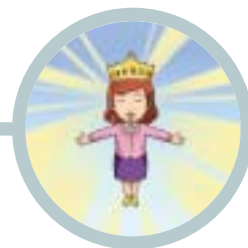
Contents

1.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필요성	05
2. 부패신고에 대한 이해	11
3.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19
4.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27
5. 신고자 보호제도	35
6.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43
7. 내부 신고에 관한 Q&A	51
부록	55
1 : 신고자 보호사건 사례	63
2 :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 사례	67
3 : 관련 법령(발췌)	





1.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필요성



1.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필요성



1. 부패행위 신고 필요성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이를 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¹⁾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이고, 사회정의의 실현인 동시에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써 청렴사회 구축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용기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크게 외부 신고와 내부 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부 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이며, 내부 신고는 조직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라 함

2002년 부패행위 신고제도 실시 이후 실제로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 13,357건 중에서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²⁾에 이첩된 외부 신고는 2008년 3/4분기 기준으로 330건(61.2%)이며, 내부 신고는 209건(38.8%)이다. 이는 내부 신고보다 외부 신고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여도 비리가 조직 안에서 감추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단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은 좀처럼 알 길이 없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관련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부패행위 신고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원천'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부패행위 신고 중에서도 조직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신고하는 내부 신고(Whistleblowing)³⁾에 대해서는 사전적·예방적 부패 억제기능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패통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내부 신고에 대한 의미와 성격 등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내부 신고의 의의

내부 신고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위원회·소속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하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을 '조사기관'이라 말함

3) '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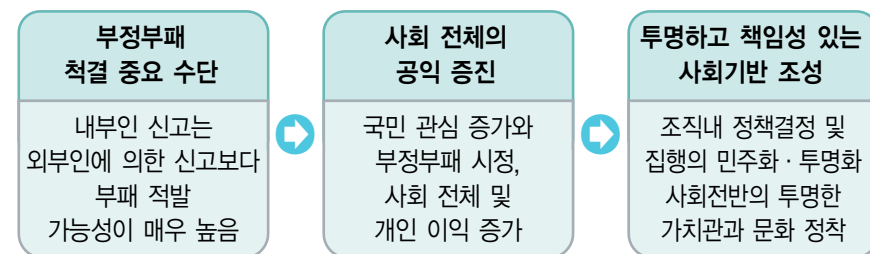


그러므로 내부 신고는 내부인에 의한 공익적·윤리적인 행위이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부정부패는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감사로 적발하거나 일반인이 감지하여 신고하기에는 원천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로 인해 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은 이러한 내부인에 의한 신고 가능성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내부 신고에 의한 부패통제는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에 의한 부패방지 행위이고,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부정의 감시이며, 사전적·예방적인 억제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듯 내부 신고는 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 통제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자율통제적 기능까지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성을 낼 수 있는 통제수단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필요성

부패행위 신고자는 공익을 위해서 부패행위 신고라는 양심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특히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소속 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조직의 부패에 맞서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 공익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부 신고는 부패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부패를 막아 낼 수 있는 등 그 의의로 인하여 내부 신고를 하는 신고자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이하 내부 신고를 한 신고자를 '내부 신고자'라 함



2. 부패신고에 대한 이해



2. 부패신고에 대한 이해



1.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의미하지만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공직중심 정의 :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이용하는 행위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⁵⁾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패행위의 정의를 크게 ①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 행위, ②공적재산의 침해행위, ③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그러므로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민원성·탄원성의 진정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떠난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패행위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 '공직자'의 개념

공직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한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도 포함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의 개념

‘직무’란 공직자가 그 직위에 따라 공무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의미한다. 즉,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부여된 권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 직무의 범위 내지 권한은 법령뿐만 아니라 지령·훈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는 물론,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를 포함(대법원 1996. 6. 14. 선고96도865 판결;

5) 이하 ‘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판결 등)

- 사항적·장소적 관할이 필요한 것도 아님. 따라서 소속청 이외 과의 소사무인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때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02 판결 등)
-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 1472 판결)
- 직무행위가 작위인가 부작위인가를 불문함. 수사를 중단하거나, 국회 의원이 의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관공무원이 밀수품 반입을 묵인 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행위에 해당함. '직무와 관련하여'란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842 판결),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대법원 1981. 4. 28 선고81도459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98도3584 판결)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개념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는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의 직무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여'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령이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시행규칙 등 제반 법령을 포함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뇌물죄 등이 그 전형적인 법령위반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인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의 개념

'이익'이란 수령자의 정치적·경제적·법적·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이 포함된다.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

나. 공적재산의 침해행위

:: '공적재산 침해행위 주체'의 개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기업의 공적재산 침해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하여 행하는 부패행위는 물론, 공직자를 기망하여 사기업 등이 행하는 부패행위도 포함된다.

:: '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가 아닌 자가 부패행위, 공적재산의 침해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2. 유형별 부패행위

:: 뇌물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공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 향응수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공금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유용한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7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47조)



::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당한 목적·방법으로 실질상 위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123조)



::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으로 이행의무가 과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22조)



::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25조, 제227조)





3.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3.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1. 부패행위 신고

법에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자 보호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이 법에 따른 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 신고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①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규정이 준용된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서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노력 책무를 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제정 · 시행의무를 부여

● 행동강령 위반사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지시 및 특정업체 물품에 대한 구매지시 등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친 · 인척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등
- 특혜의 배제 위반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등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
지방의회 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시 의원의 부당한 청탁 등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위반
승진인사 청탁, 부당한 대학교수 임용 인사청탁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학교장의 물품납품 관련 이권개입 및 부당한 해외연수대상자 모집 행위 등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위반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부당한 납품업자 소개행위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직무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투자행위, 주식 매입, 토지 매입 등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
개인의 주말 농장에 공용차량 사용, 공용물 등을 자택에서 사용 등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수학여행업체로부터 학교장 무료여행,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부담 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월 3회 초과 및 50만원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피감기관에 출강하여 고액 강의료 수수 등
-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차용 등
-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위반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 대리통지 행위, 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등

나.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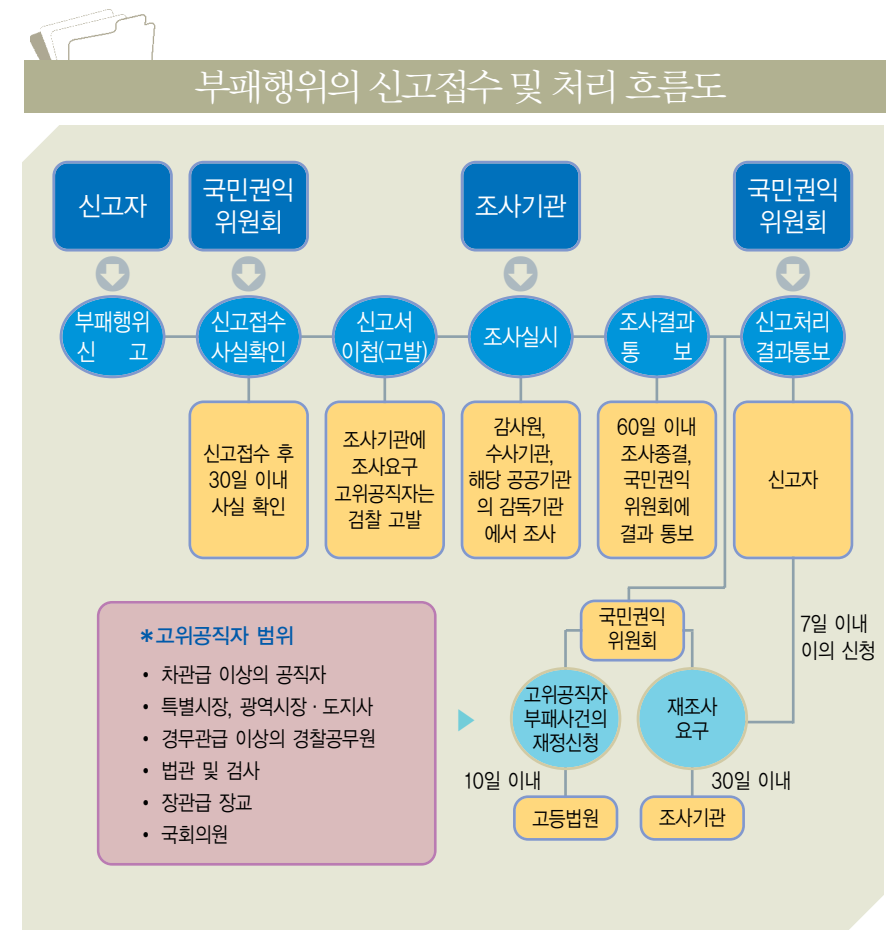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는 실명신고의 원칙과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증거제시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 우편 · 직접방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2)360-6879
- 인 터 넷 : www.acrc.go.kr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상담 - 신고하기' 란 이용, '고충민원상담'과는 구별됨을 유의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다.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가능)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신고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로서 부패혐의 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고발



라. 신고 효력

:: 일반적 효력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신분보장·신변보호·보상 및 포상 등 법이 규정하는 각종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불이익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신고자가 법에 의한 신고를 한 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해 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해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와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 추정 효력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피신고기관에 전환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다.

::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경우

처음에는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 또는 주동자의 압력에 의해 부패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나중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가 과거에 저지르거나 가담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동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득이하게 부패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가 있고,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다면 과거의 범죄는 불문에 붙여졌을 것이지만 부패행위 신고로 드러난 것이므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 및 징계처분에 대한 감면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와의 상충문제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신고시 유의사항

:: 허위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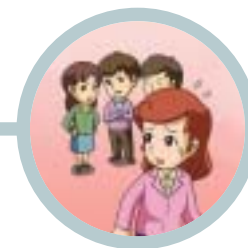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수사·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4.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4.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⁶⁾ 동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 등 법적인 각종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수단 인만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및 보복이 조직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유형

:: 보복성 인사조치 · 징계 · 근무조건 차별

조직이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불이익 유형으로는 비선호부서로의 전보조치, 징계 등의 보복성 인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전보조치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승진 탈락,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하는 것, 임금의 차별지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집단따돌림 · 인신공격 · 고립시키기

조직은 내부 신고자의 신고의 동기나 업무상의 능력 등 다른 것을 문제 삼아 내부 신고 및 제보를 폄하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을 신고자의 경솔한 판단 · 의리 없는 행동으로 몰아가고 그를 동료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 묵시적 협박

조직은 내부 신고자를 해고시킨다고 위협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6) 이하 '신분공개'는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말함

:: 실패 유도

내부 신고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 조사권한 · 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의 권한없이 업무를 시키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게끔 하는 보복 전략이다.

:: 내부 신고자에 대한 고소 · 고발

내부 신고자가 신고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잡아, 그것을 빌미로 불법행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 고발할 수 있다.



2. 내부 신고자의 대처법

가. 부패신고 이전 단계

:: 조직내부에서 문제를 조정, 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부패행위 신고가 공익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속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불명예와 피해를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직 내부의 관련부서나 책임자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직이나 단체의 시정여의가 없고 오히려 조직이 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직내부에서의 문제를 조정, 시정하기 보다는 위원회 등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부패를 발견했을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

내부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과 의논해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이러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인이 먼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경우, 조직은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전부터 자신이 먼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조직의 부패에 대하여 동료들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어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부패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로 분개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은 없는지도 알아본다. 다만, 신고 이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동료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직은 부패 행위 신고의 의도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시도하는데 이럴 때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는 위로와 도움이 된다.

::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조직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가한 보복에 대하여 매일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불이익을 증명하는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들을 모은다.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소속 조직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관련된 문서들을 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사전에 복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한다.

내부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6하원칙 또는 8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본다. 글은 간결하고 부패행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신고를 요약한 이 문서는 신고자가 무엇 때문에 신고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가 있으며, 내부 신고자와 내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조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신고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전문가 또는 경험자의 조언을 구한다.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만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신고를 위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증거에 어떤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화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내부 신고가 발생하면 조직이나 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분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신고사건을 장기화함으로써 내부 신고자가 지치도록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언론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법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위원회에 내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패수의 환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포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직장내 업무용 전화를 이용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 열람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유해사이트 차단 등을 위해 내부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의 메일이나 문서유통 경로를 감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한 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내역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신고자로 밝혀질 수가 있다.

직장내 업무용 컴퓨터로 부패행위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연찮게 동료나 타부서의 직원이 신고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서 등을 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부패신고 이후 단계

1) 신분이 밝혀지기 전

::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신고자 보호사항 처리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위원회와 통화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

조직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조직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평소처럼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다. 신고 이후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면 주변의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결근·지각 등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내부 신고 등에 대해 언급될 때 초연하게 행동한다.

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직내에서 동료 또는 타부서의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대한 관심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궁금증을

언급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 신고자를 같이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보다는 초연하게 행동한다.

::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서 부패행위 신고사항 또는 신고자 보호사항 처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신고자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뿐만 아니라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 참고인, 협조자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조사관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아 불안하더라도 당당히 행동한다.

내부 신고자로 의심받는 것 같아 동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불이익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2) 신분이 밝혀진 후

:: 공식적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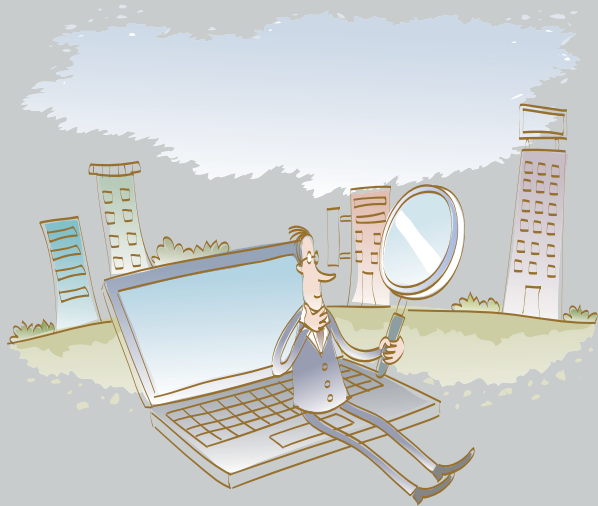
내부 신고자로 조직내부에 알려졌을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신고자의 귀책사유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부 신고자가 징계 또는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 및 조직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한다.

이는 부패신고 사건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시 소속기관의 처분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여 남겨 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요청을 한다.



5. 신고자 보호제도



5.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조직 내부에서의 부패행위가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되어감에 따라 부패행위의 적발과 규명을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의 내부문제에 정통한 내부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외부의 감사나 수사에 의해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처벌·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고문화 정착과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신고자 보호 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가 있다.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분보장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등 요구

● 신변보호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 및 신체상 상해방지 등



1. 비밀보장

-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신분상 비밀보장을 하고 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관련조항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の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확인결과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신분공개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위원회의 신분보호조치 요구를 받거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 보장 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을 들어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하였다.



2. 신분보장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①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규정이 준용된다.

신분보장 사례

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비가 부당지출 되었다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청으로 원상회복조치 되었다.



3. 신변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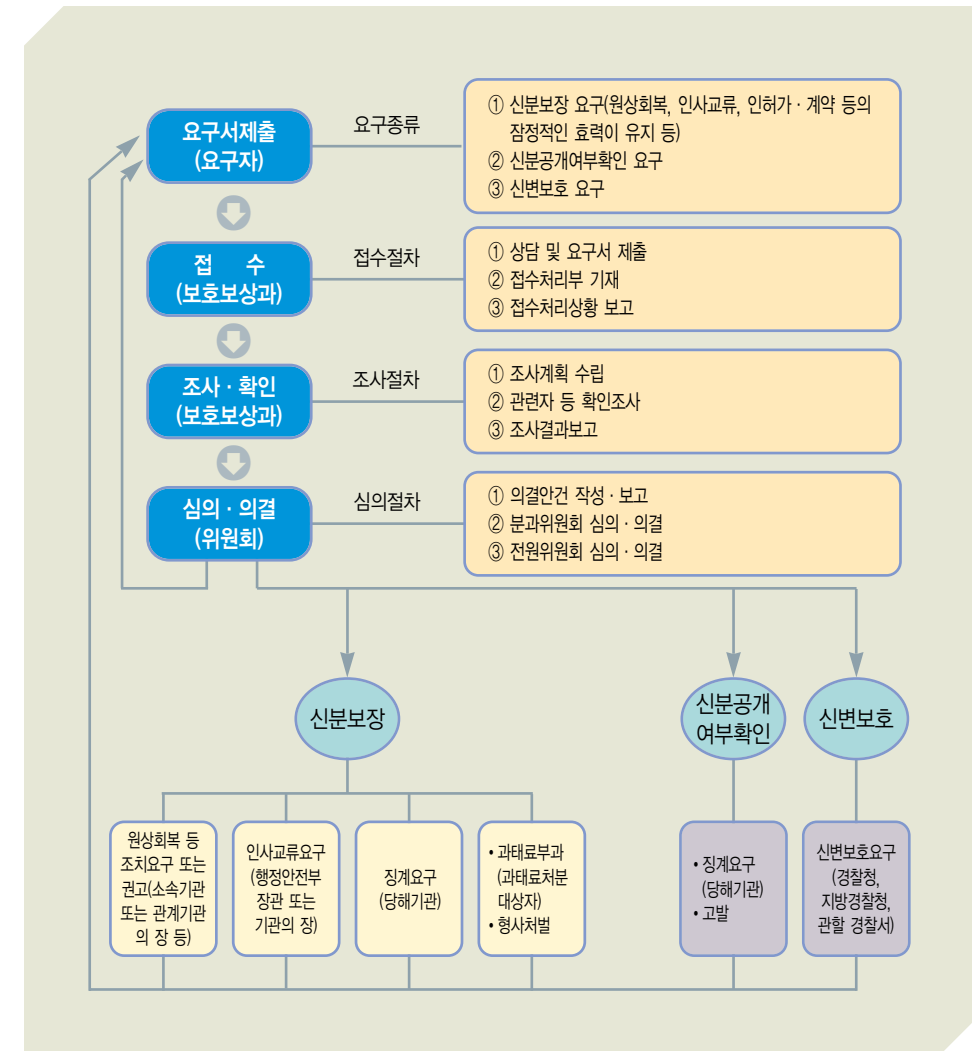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부패행위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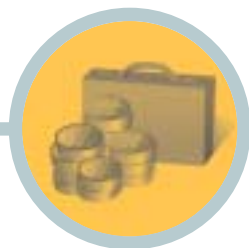
신변보호 사례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하여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였다.

신고자 보호업무 흐름도



6.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6.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행위의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기하고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므로 제도의 도입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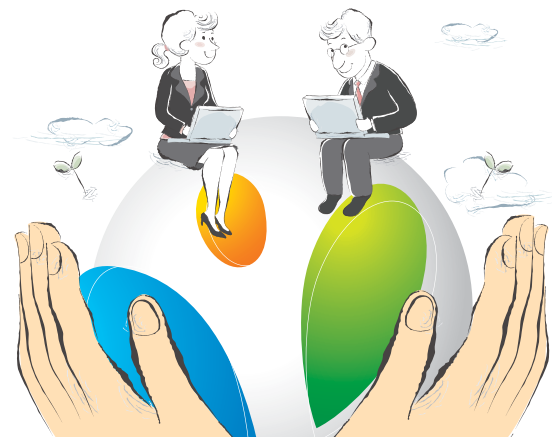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는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지급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1. 신고 보상금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신고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면 일실될 수입인데 신고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부패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가. 보상금 지급사유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⁷⁾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① 물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②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③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④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⑤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7)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 치료비, 이사비,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

나. 보상금 지급절차

:: 지급신청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한다.

다.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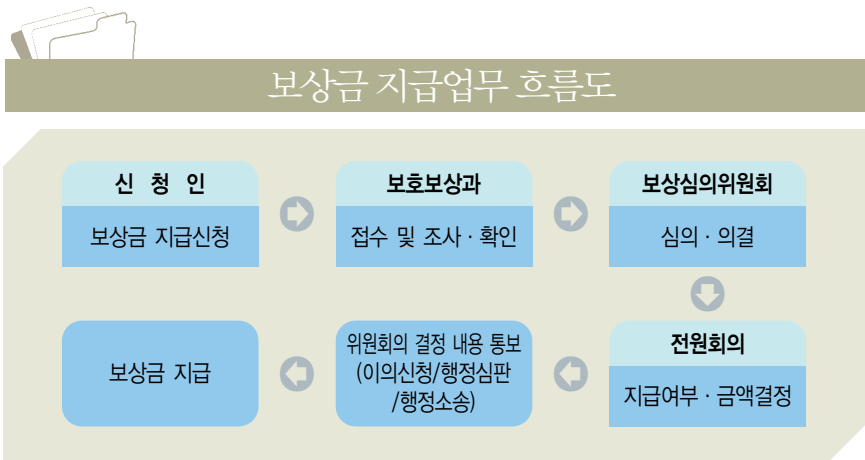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위 보상금 지급사유에 부패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①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②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③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④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예외적으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금 지급 사례

청소대행 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을 과다 계산하여 허위로 경비를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업체와 유착하여 이를 묵인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신고하여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주의조치 하였으며, 과다 지급된 용역비 10억 1,503만원을 환수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6,375만원의 보상금 지급



2. 신고 포상금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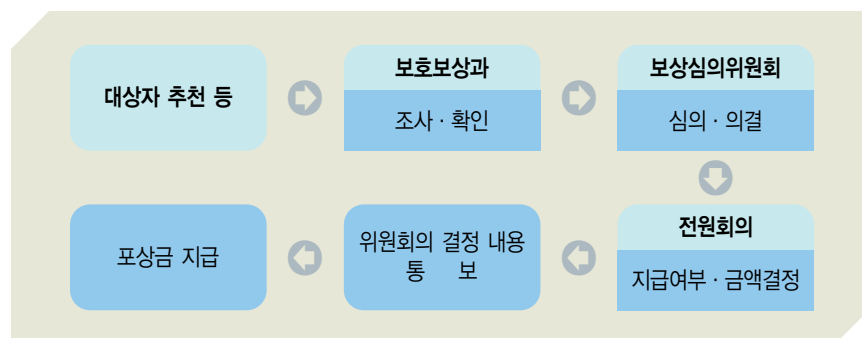
-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사유 중 ①~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포상금 지급 사례

군 부대의 납품과 관련하여 단가조작, 입찰정보 사전유출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납품이 이루어져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리내용을 신고하여 관련자 12명을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편취 및 뇌물수수금액 1,742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7. 내부 신고에 관한 Q&A



7. 내부 신고에 관한 Q&A

Q 위원회에 신고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 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Q 부패행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가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신고자에 대한 형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Q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위원회에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 다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및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Q 부패행위를 전화나 구두상으로 신고한 경우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Q 타인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조사'에 조력한 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신고'에 조력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부록

1. 신고자 보호사건 사례
2.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 사례
3. 관련 법령 (발췌)



부록 01 신고자 보호사건 사례

신고자 보호사건 사례

신분보장조치요구가 인용된 사례

사례 1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소속기관의 간부들 식사비용 마련을 위한 금전각출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요청한 후, 아무런 물증 없이 비리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기관장에게 항명하여 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경징계의결이 요구됨. 이후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고 경징계의결요구 취소를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그 후 소속기관에서 요구인의 주변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경징계의결요구를 중징계의결요구로 변경하고 해임처분 됨에 따라 요구인은 신분보장조치 요구내용을 해임처분 취소로 변경함.

● 조사 결과 ●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직후에 요구자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해임하였다는 점,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점, 다른 징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 등이 인정됨.

● 처리 결과 ●

위원회는 요구인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 요구인은 복직처리 됨.

사례 2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학교 교사들이 특정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부패신고를 한 후, 동료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향후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로의 인사교류를 요구함.

● 조사 결과 ●

- 부패신고에 따른 위원회 조사, 경찰청 조사 등의 업무부담과 번거로움을 요구인이 야기하였다고 하여 동료교사들이 수시로 불만을 표시하고 요구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 성적조작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냐는 식의 요구인이 심리적 불안을 느낄 말들을 들은 바가 있는 점,
- 향후 관련 교사와 학생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해질 경우 그들로부터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속학교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됨.

● 처리 결과 ●

위원회는 요구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 소속학교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인사교류를 요구, 요구인은 인사교류 조치됨.

사례 3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군 장교로서 상급자가 군납품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였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몇 달 후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

그리고 상급자의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 최하위 근무평정, 전출 인사내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사 결과 ●

-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신고일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어 ‘신고로 인한 근무조건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무평정과 관련해서는, 피신고자인 상급자가 실시한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는 바, 이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됨.
- 전출과 관련하여서는, ○○본부로 부당하게 전출인사 내신되어 인사조치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조치 전에 ○○본부 인사담당자와 인사상담하면서 현소속부대 이외 부대로 전출을 희망하였고, 현보직이 정상적인 ○○군 소령의 보직인 점을 고려할 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 처리 결과 ●

불공정한 근무평정에 대하여는 다시 평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보정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제한된 호봉승급 6개월에 대해 소급하여 호봉승급 조치할 것과 승진심사 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군 참모총장에게 요구함.



위원회의 도움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 사례

사례 1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시 쓰레기수거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시 청소사업 관련 시청 공무원들의 부패사건에서 부패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준 자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원들은 쓰레기 상차원이 별도로 있으나, 자신만이 혼자서 운전과 쓰레기 상차업무를 겸임하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시정을 요구함.

● 처리 결과 ●

위원회가 ○○시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소사업소장이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근무조건상 차별을 시정하기로 약속, 용역업체가 별도의 상차원이 있는 청소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취하함.

사례 2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서울○○병원의 의료기기 납품 관련 비리를 신고한 후 광주○○병원으로 전보조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처리 결과 ●

위원회는 ○○의료공단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중, ○○의료공단이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요구인을 원직복귀시키겠다는 공문을 시행하고 요구인과 화해함. 원직복귀가 예정된 상황에서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필요성이 소멸하고 요구인이 복귀 후 직원과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취하함.

사례 3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편취 등 비리 의혹을 신고한 후 직위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처리 결과 ●

위원회는 ○○○○병원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중, ○○○○병원이 요구인과 직위해제와 관련한 화해를 한 후, 요구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관련 공문을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요구인은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취하함.



신분공개사실 확인 사례

사례 1

신분공개사실 확인, 경고 조치

● 요구 내용 ●

요구인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함.

● 조사 결과 ●

위원회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관 송부하였는데, 그 문서를 수령한 공공기관의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성명이 적시된 문서중 일부를 피신고자인 직원 등에게 보여주고, 피신고자 등은 요구인의 직장상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서를 복사까지 해준 사실이 확인됨.

● 처리 결과 ●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에 신분공개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경고조치 하였음을 통보함.

사례 2

신분공개사실 확인, 주의 촉구

● 요구 내용 ●

요구인은 ○○연구원 직원으로 소속부서의 출장비 횡령의 부패행위를 소속기관에 신고한 후, 자체 감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함.

● 조사 결과 ●

요구인은 소속기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속부서의 출장비 횡령 등 고충상담을 하였고, 상담 후 기관장의 지시로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요구인은 소속기관에 출장비 횡령의 부패행위를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신고함. 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역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특별감사의 실시 경위가 ‘○○○의 고충처리를 위하여’임을 언급하여 요구인의 신분을 명시함.

● 처리 결과 ●

- 요구인이 고충상담을 한 후 행정실에서 공문을 시행하면서 요구인의 신분을 명시한 것은 부패신고가 기명의 문서로서 제출되기 이전이라서 직접적인 신고자 비밀보장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사역**이 요구인의 신분을 명시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규정 위반에 해당함. 다만,
 - 부패신고 전 이미 고충처리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었던 점,
 - 부패신고의 동기가 고충상담의 후속 처리과정에서 감사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그 문서의 제목이 ‘진술서’로 제출된 점,
 - 요구인이 진술서의 공개를 제한적으로 동의한 점을 감안하여,
-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해당 공공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함.



신변보호조치요구 사례

사례 1

〇〇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들의 신체적 위해 및 협박성 발언을 전해 들었고, 차량운전 및 외출 중에 테러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구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신변불안’이 존재하고 신속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긴급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사례 2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〇〇시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의 동생 등으로부터 돌발적인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요구인의 거주지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관계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시설이 없고, 가족은 심야에 귀가하는 등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구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신변불안’이 존재하고 신속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긴급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부록 02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 사례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 사례

케미컬사 사건

미국 미시건 케미컬사는 주(州)의 사료용곡물협동조합에서 가축사료 배합용 원료를 납품해 오던 중, 실수로 독성이 강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폴리브롬화 비페닐을 사료용 영양 첨가물로 잘못 알고 1000파운드 이상이나 납품했다.

그 결과 농장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축을 잃었고, 이 물질에 오염된 가축의 고기를 먹은 미시건주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주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독성물질 납품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아냈고, 회사가 그 사건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사실을 말해준 직원을 해고하자 그것을 계기로 주 의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의 직원들이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외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보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그 결과 1981년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를 규정한 최초의 법인 미시건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했다.

미 연방수사국 요원 콜린 롤리 사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2년 올해의 인물로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콜린 롤리 등 3명의 내부신고자를 선정했다.

9·11 테러 당시 “FBI가 테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폭로한 전 FBI 미니애폴리스

지부 요원 롤리는 9·11 테러 한달 전쯤 용의자 자카리아스 무사위를 체포한 뒤 본부에 수사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FBI 본부는 ‘범죄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거부했고,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테러공격을 위해 미국의 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있다’는 아리조나주 지부의 보고도 묵살했다.

막상 전대미문의 테러가 발생하자 로버트 몰러 FBI 국장은 “테러공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FBI가 갖고 있었더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을 것”이라며 사전정보 인지사실을 잡아땀다. 뒤이어 FBI 본부의 무능함과 관료주의적 행태가 속속 공개되자 “수사를 했더라도 테러공격 자체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논란이 정치권과 행정부간 소모적 공방으로 이어지자 보다 못한 롤리는 FBI 본부의 무능한 일 처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말바꾸기 과정을 상세히 적은 편지를 공개했다.

결국 롤리의 내부고발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FBI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토안보부 설치 등 테러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스타워즈 부정사건

미국 군전략방위본부 소속 과학자 소시어는 미국 미사일 방위체제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시스템 설계자로 근무하면서 스타워즈 개발과 관련된 부정과 예산낭비를 발견하고 내부공익신고를 하였다.

그 후 상관들로부터 무수한 보복을 당하였고 내부공익신고자보호단체인 G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에 도움을 요청했다. GAP의 변호사들은 그를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고로 인한 보복이라고 간주하고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특별조사국에 신고하여 특별조사국의 조사를 통해 소시어는 복직하게 되었다.

대기오염 물질 신고사건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연구소의 환경 엔지니어인 노컴슨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이 연구소가 ‘대기청정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점검장비는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플루토늄, 우라늄과 같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조직 내부에 보고하고 계속 문제제기 하였으나 오히려 상관과의 불화 속에서 많은 학대와 위협, 낮은 근무성적평정을 받았다. 내부공익신고자보호단체인 GAP는 연구소의 이러한 처분을 부당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노동성에 신고하였고 노동성은 조사 후 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환경문제 신고사건

버지니아 주정부 폐기물관리부 수퍼펀드 프로그램의 전 책임자인 에월드는 주가 운영하는 유독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조직 내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조직이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내부공익신고를 하였다.

주정부는 그녀를 해고시켰고 이에 대해 내부공익신고자보호단체인 GAP는 미국 최고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그녀를 복직시키고 주정부가 처리장의 관리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는 활동을 전개했다.



부록 03

관련 법령 (발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이권개입·알선·청탁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정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 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다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제6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 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 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 등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 등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

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 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위원회는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동기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1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 상의 차별	300만원

내부신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 2008년 9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 화 • (02) 360-6817

전 송 • (02) 360-6873

본 책자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전제 또는 복제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은 재활용 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